

세무 뉴스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배경

- 2021년 10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제 406/NQ-UBTVQH15 (“제406호 결의서”) 호 결의서를 발표하였으며, 본 결의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다.
- 2021년 10월 27일 정부는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를 안내하는 제 92/2021/ND-CP 호 (“제92호 시행령”) 시행령을 공표했으며, 본 시행령은 제406호 결의서의 실행일부터 시행된다.
- 딜로이트는 본 뉴스를 통해 제406호 결의서 및 제92호 시행령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1. 특정 대상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CIT 30% 감면;**
2. 가족 및 개인사업자의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세금 면제;**
3.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VAT”) 감면;**
4. 2020년, 2021년에 발생한 **세금 납부액,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연체이자 면제**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제406/NQ-UBTVQH15호 결의서 (2021년 10월 19일)

세금 면제 및 감면

CIT 감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2021년 과세연도 납부해야 하는 CIT 30% 감면

- 총 매출이 VND200 bil 미만이며
-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Note: 2020년 또는 2021년 신규 설립 또는 합병, 분할 및 파산 등의 기업에 적용 되지 않음.

VAT 감면

다음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VAT 30% 감면

- 물류/숙박/식음료/관광 관련 서비스; 및
- 출판 제품/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온라인 플랫폼 제품/서비스 제외)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 Ltd

제406/NQ-UBTVQH15호 결의서 (2021년 10월 19일)

세금 면제 및 감면

PIT & VAT 및 기타 의무세금 면제

적용 대상: 각 성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결정된 2021년 Covid 19의 영향을 받은 지역 (District - level)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가족 및 개인 사업자

면제 기간: 2021년 3분기 및 4분기

Note: 소프트웨어 제품/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디지털 제품/서비스 및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영화, 사진, 광고 제공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연체이자 면제

- 2020년 손실이 발생한 기업 및 단체 (종속 단위 및 사업장 포함)에 대해 적용함;
- 세금 납부액,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 면제 대상: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한 연체이자

Note: 연체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소급적용 불가



세무 뉴스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제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19일 제406/NQ-UBTVQH15호 결의문을 안내

1 특정 대상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법인세 ("CIT") 30% 감면

기준	제92/2021/ND-CP호 시행령
적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과세연도 CIT 감면을 적용받는 총 매출액 (법인세법상 제8조)은 매출 차감, 금융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및 기타 소득을 제외하며 기업의 제품/상품, 가공,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수취 및 해당 대가와 단가 조정 등을 포함한다. 과세연도 총 CIT 수익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 사업장의 수익을 포함한다.
CIT 감면액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T 감면액은 기업의 총소득 (법인세법 상 제18조 제3항에 명시된 수익 포함)에 따라 계산된다; CIT 감면액은 기업이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1년 과세연도 납부해야 할 CIT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고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CIT 예정 납부시 납세자가 직접 CIT 감면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납세자는 2021년 9월 29일 제80/2021/TT-BTC 호 시행규칙의 신고양식 및 본 시행령에 첨부된 CIT 부록을 사용하여 CIT 감면액을 신고한다.

세무 뉴스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제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19일 제406/NQ-UBTVQH15호 결의문을 안내

2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2021년 3분기 및 4분기)

기준	제92/2021/ND-CP호 시행령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산업, 지역, 세금 신고 및 납부 형태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가족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06호 결의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
면제 가능한 세금 및 면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호세를 포함한다 ; 면제 대상 기간: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상기 면제 대상 기간에 발생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과납부세액은 다음 분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과 상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제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19일 제406/NQ-UBTVQH15호 결의문을 안내

3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VAT") 감면

기준	제92/2021/ND-CP호 시행령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교통 서비스, 숙박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등; (ii) 출판 제품 및 서비스; 영화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출판 활동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시행령에 첨부된 리스트에 기재된 감면 대상 물품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VAT 감면
세금 감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 방법으로 VAT 납부하는 기업 및 단체는 본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VAT세율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 및 단체는 본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 활동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에서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납부 및 공제 방식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규정하였다. 세금 감면 대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별도 계산서 발행을 규정한다; 판매자 및 구매자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조정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VAT 와 매입 VAT을 감면한다.

세무 뉴스

COVID-19로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제 406/NQ-UBTVQH15호 결의서 및 결의서를 안내를 위한 제 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제92/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10월 19일 제406/NQ-UBTVQH15호 결의문을 안내

4 가족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세금 면제(2021년 3분기 및 4분기)

기준	제92/2021/ND-CP호 시행령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에 손실이 발생한 기업 및 단체 (종속 단위, 사업장 포함)에 적용된다.; • 세금·토지사용료·토지임대료 연체이자 면제; • 면제대상 : 2020년과 2021년 연체이자; • 제406호 결의문의 시행일(2021년 10월 19일) 이전에 연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는 연체이자 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세무 당국에 제출한다; •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후 15 영업일 이내에 세무 당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부적격한 경우: 연체이자 면제를 수락하지 않음을 통보한다 (ii) 적격의 경우: 연체 이자 면제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한다
구체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ii) 세무 조사 및 감사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가 증가하는 경우 납세자는 증가한 세금,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해 2020년, 2021년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VIETNAM**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